8-9. 인권센터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은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 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 대학원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① 본교는 교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을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본교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③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그 밖의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인권센터 및 성희롱·성폭력에 규정에 관한 심의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및 해결 방안
3.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보고
4. 해당 사건의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0조(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이미 종료된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한 신고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이를 센터에 이송해야 한다.

⑤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면 신고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2. 제10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신고 시에 피신고인이 교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하면 바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 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바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제15조(조정)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건당사자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 조정안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 절차가 종결된다.
④ 센터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운영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관계 부서의 협력의무) 교내 관련 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인권침해 중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